

# 대법원 2024도10735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[성착취목적대화등] 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위반(성착취목적대화등) 및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으로 기소된 사안임  
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권영준)는,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,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도 10735 판결)

## 1. 사안의 개요

### 가. 당사자들의 관계

- ▣ 피고인 ⇒ 당시 30대 후반 남성
- ▣ 피해자 ⇒ 당시 10세 여아
- ▣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상현실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음

### 나. 공소사실의 요지

- ▣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
  - 피고인은 2022. 1. 6.경부터 2022. 1. 26.경까지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"뽀뽀"라는 표현을 사용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총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

▣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<sup>1)</sup> 위반(성착취목적대화등)

-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

## 다. 관련 규정

### [아동복지법]

제17조(금지행위)

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5.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(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)

제71조(벌칙)

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2.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(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)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 [청소년성보호법]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"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"란 아동·청소년,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·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·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, 직무·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·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성교 행위

1) 이하 ‘청소년성보호법’

나. 구강·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

다.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·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

라. 자위 행위

제15조의2(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)

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

2.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·권유하는 행위

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·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.

## 2. 소송경과

가. 제1심 ➡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 부분 **유죄**, 청소년성보호법 위반(성착취목적대화등) 부분 **이유 무죄**[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, 사회봉사명령 120시간,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, 취업제한 5년]

▣ 청소년성보호법 위반(성착취목적대화등) 부분 무죄 이유

● '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'란 그와 같은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을 때 아동·청소년에게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·권유하는 것에 비견될 정도로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함

● 피고인이 성교 행위 등을 비롯한 각종의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이러한 성행위를 직접 연상하게 하는 성적 묘사를 하지는 않았고,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나 물

건, 장소 등에 관한 직접적·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, 피고인이 16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

**나. 원심 ➡ 전부 유죄[징역 2년 집행유예 3년, 사회봉사명령 200시간,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, 취업제한 5년]<sup>2)</sup>**

▣ 청소년성보호법 위반(성착취목적대화등) 부분 유죄 이유

-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의 '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'의 내용이 반드시 같은 항 제2호(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·권유하는 행위)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님
-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 및 그 전후 맥락,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,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, 피해자가 느낀 감정 및 대처방법,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하고, 그 기간·횟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화가 지속 또는 반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함

### 3. 대법원의 판단

#### 가. 쟁점

- ▣ 청소년성보호법 위반(성착취목적대화등)죄의 성립 여부

#### 나. 판결 결과

- ▣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(원심 수긍)

---

2)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

## 다. 판단 내용

- ▣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(성착취목적대화등)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